

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 대상 신규 비교표

현 행			개 정			
【별표 1】			【별표 1】			
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 대상			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 대상			
■ 시설물 분야			■ 시설물 분야			
구 분	대 상 범 위	비 고	구 분	대 상 범 위	비 고	
도로 시설	교 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연장 20m이상~100m미만 교량 ◦ 100m 이상 농어촌 교량(비법정도로) 	교 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- 「도로법」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~ 100m 미만 교량 - 「농어촌도로정비법」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- 비법정도로 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		
	터 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연장 500m미만의 2차로 이하의 터널 	터 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터널로 - 연장 500m 미만의 지방도, 시도, 군도 및 구도의 터널 - 농어촌도로의 터널 	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터널 제외	
	육 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 		육 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 	
	지 하 차 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연장 100m미만으로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지하차도 		지 하 차 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연장 100m미만으로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지하차도 	
지하도상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 		지하도상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 		
스 키 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전수관리 - 스키장 내 삭도시설(리프트 등) 포함 		스 키 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전수관리 - 스키장 내 삭도시설(리프트 등) 포함 < 삭제, 삭도궤도로 분류 변경 > 		
삭도궤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전수관리(관광시설 케이블카 등) ※ 스키장내 삭도시설(리프트 등) 제외 	궤도운송법 적용 대상	삭도궤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전수관리(관광시설 케이블카 등) ※ 스키장내 삭도시설(리프트 등) 포함 	궤도운송법 적용 대상	
유 원 시 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전수관리 - 종합유원시설 및 일반 유원시설 	관광진흥법 적용 대상	유 원 시 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전수관리(종합유원시설 및 일반유원시설) 	관광진흥법 적용 대상	
토 목 공사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장 	착공계 접수시 지정	토 목 공사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장 	착공계 접수시 지정	
공사장 중단된 공사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장 		공사장 중단된 공사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장 		
수 상 안 전 시 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5톤 이상 동력선 전수 ※ 해수면에서 내수면으로 운항하는 유·도선포함 (운항구간 중 최종 종착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·관리) 	유선 및 도선사업법 적용대상(해수면 제외)	수 상 안 전 시 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5톤 이상 동력선 전수 ※ 해수면에서 내수면으로 운항하는 유·도선포함 (운항구간 중 최종 종착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·관리) 	유선 및 도선사업법 적용대상(해수면 제외)	
수상레저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보유 사업장 	수상레저안전법 적용 대상(해수면 제외)	수상레저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보유 사업장 	수상레저안전법 적용 대상(해수면 제외)	
레프팅보트 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레프팅 보트 보유 사업장 	대상(해수면 제외)	레프팅보트 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레프팅보트 보유 사업장 	대상(해수면 제외)	
물놀이 위험구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「물놀이 안전 매뉴얼」에 따른 시설 및 지역 		물놀이 위험구역	< 삭 제 >		
기 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및 지역 		기 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및 지역 		
		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※ 총공사비는 공사예정금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으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보상비는 제외하며 조달청계약인 경우 조사가격을 기준으로 작성된 금액을 말한다.</p>			

현 행

■ 건축물 분야

구 분	대 상 범 위	종 류	비 고
지방공공청사	◦ 다중이용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연면적 660㎡이상의 청사 및 업무시설		
공 동 주 택	아 파트	◦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5층 이상 ~ 15층 이하	다세대주택 제외
	연립주택	◦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연면적 660㎡초과, 4층 이하	
다중 이용 시설	판매시설	◦ 「건축법시행령」 제3조의4 별표1.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7호가, 나, 다목에 따른 판매시설로 연면적 1,000㎡ 이상 ~ 5,000㎡ 미만	도매시장, 소매시장, 상점
	대형숙박시설	◦ 「건축법시행령」 제3조의4 별표1.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로 해당시설 연면적 1,000㎡ 이상 ~ 5,000㎡ 미만	일반숙박시설, 관광호텔, 휴양콘도미니엄 등
	종합여객시설	◦ 「건축법시행령」 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8호가목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로 연면적 5,000㎡ 미만 ◦ 「항만법」 제2조제5호나목의 여객이용시설로 연면적 5,000㎡ 미만	고속·시외버스터미널, 여객선터미널
	공연시설	◦ 「건축법시행령」 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가목에 따른 공연장으로 연면적 300㎡ 이상 ~ 5,000㎡ 미만	연회관, 음악당, 서커스장 등
	집회시설	◦ 「건축법시행령」 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나목에 따른 집회장으로 연면적 300㎡ 이상 ~ 5,000㎡ 미만	예식장, 마권장의발매소, 회의장 등
	관람전시시설	◦ 「건축법시행령」 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다목에 따른 관람장으로 바닥면적 1,000㎡ 이상	경마장, 경륜장, 자동차 경기장 등
		◦ 「건축법시행령」 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으로 연면적 1,000㎡ 이상 ~ 5,000㎡ 미만	박람회장, 전시장, 박물관, 미술관 등
	의료·장례시설	◦ 「건축법시행령」 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 가목에 따른 병원 으로 연면적 1,000㎡ 이상 ~ 5,000㎡ 미만	종합병원, 병원, 요양병원 등
◦ 「건축법시행령」 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8호 장례식장으로 연면적 1000㎡ 이상 ~ 5,000㎡ 미만		장례식장	

개 정

■ 건축물 분야

구 분	대 상 범 위	종 류	비 고	
공공업무시설	◦ 연면적 1,000㎡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청사			
공 동 주 택	아 파트	◦ 5층 이상 ~ 15층 이하	※ 다세대주택 제외	
	연립주택	◦ 연면적 660㎡초과, 4층 이하		
중소형 건축물	판매시설	◦ 「건축법시행령」 제3조의5 별표1(용도별 건축물의 종류) 제7호가, 나, 다목에 따른 판매시설로 연면적 1,000㎡ 이상 ~ 5,000㎡ 미만	도매시장, 소매시장, 상점 (비디오·게임제공업 등)	
	숙박시설	◦ 「건축법시행령」 제3조의5 별표1(용도별 건축물의 종류)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로 해당시설 연면적 1,000㎡ 이상 ~ 5,000㎡ 미만	일반숙박시설, 관광호텔, 휴양콘도미니엄, 고시원 등	
	운수시설	◦ 「건축법시행령」 제3조의5 별표1(용도별 건축물의 종류) 제8호가목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로 연면적 1,000㎡ 이상 ~ 5,000㎡ 미만 ◦ 「항만법」 제2조제5호나, 다목의 여객이용시설 또는 종합여객시설로 연면적 1,000㎡ 이상 ~ 5,000㎡ 미만	고속·시외버스터미널, 여객선터미널	
	문화 및 집회 시설	공연장	◦ 「건축법시행령」 제3조의5 별표1(용도별 건축물의 종류) 제5호가목에 따른 공연장으로 연면적 500㎡ 이상 ~ 5,000㎡ 미만	연회관, 음악당, 서커스장 등
		집회장	◦ 「건축법시행령」 제3조의5 별표1(용도별 건축물의 종류) 제5호나목에 따른 집회장으로 연면적 500㎡ 이상 ~ 5,000㎡ 미만	예식장, 마권장의발매소, 회의장 등
		관람장	◦ 「건축법시행령」 제3조의5 별표1(용도별 건축물의 종류) 제5호다목에 따른 관람장으로 바닥면적 1,000㎡ 이상 ~ 5,000㎡ 미만	경마장, 경륜장, 자동차 경기장 등
		전시장	◦ 「건축법시행령」 제3조의5 별표1(용도별 건축물의 종류)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으로 연면적 1,000㎡ 이상 ~ 5,000㎡ 미만	박람회장, 전시장, 박물관, 미술관 등
	의료시설	◦ 「건축법시행령」 제3조의5 별표1(용도별 건축물의 종류) 제9호가목에 따른 병원으로 연면적 1,000㎡ 이상 ~ 5,000㎡ 미만	종합병원, 병원, 요양병원 등	
장례식장	◦ 「건축법시행령」 제3조의5 별표1(용도별 건축물의 종류) 제28호 장례식장으로 연면적 1000㎡ 이상 ~ 5,000㎡ 미만	장례식장		

현 행				개 정					
구 분	대 상 범 위		종 류	비 고	구 분	대 상 범 위		종 류	비 고
다중 이용 시설	종교시설	◦ 「건축법시행령」 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6호 가목에 따른 종교집회장으로 연면적 300㎡이상 ~ 5,000㎡미만	교회, 성당, 사찰, 기도원, 수도원 등		중소형 건축물	종교시설	◦ 「건축법시행령」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6호가목에 따른 종교집회장으로 연면적 500㎡ 이상 ~ 5,000㎡ 미만	교회, 성당, 사찰, 기도원, 수도원 등	
	위락·휴게시설	◦ 「건축법시행령」 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6호 마목에 따른 위락시설로 연면적 300㎡ 이상 ~ 5,000㎡미만	무도장, 무도학원 등			위락시설	◦ 「건축법시행령」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6호마,바목에 따른 무도장, 무도학원, 카지노 영업소로 연면적 300㎡ 이상 ~ 5,000㎡ 미만	무도장, 무도학원, 카지노 영업소	
		◦ 「건축법시행령」 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7호 라목에 따른 관망탑으로 연면적 300㎡ 이상 ~ 5,000㎡미만	관망탑			관광휴게시설	◦ 「건축법시행령」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7호다,라,마목에 따른 어린이회관, 관망탑, 휴게소로 연면적 300㎡ 이상 ~ 5,000㎡ 미만	어린이회관, 관망탑, 휴게소	
	청소년수련시설	◦ 「건축법시행령」 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2호 가,나,다목에 따른 수련시설로 연면적 1,000㎡ 이상 ~ 5,000㎡미만	수련관, 수련원, 유스호스텔			수련시설	◦ 「건축법시행령」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2호가,나,다목에 따른 수련시설로 연면적 1,000㎡ 이상 ~ 5,000㎡ 미만	수련관, 수련원, 유스호스텔	
	노유자시설	◦ 「건축법시행령」 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1호 가,나,다목에 따른 노유자시설로 연면적 1,000㎡ 이상 ~ 5,000㎡미만	아동관련시설(어린이집, 아동복지시설 등), 노인복지시설 (노인주거복지시설, 노인의료복지시설 등),사회복지시설, 근로복지시설	※ 단독공동주택, 1종근린생활 시설 제외		노유자시설	◦ 「건축법시행령」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1호가,나,다목에 따른 노유자시설로 연면적 1,000㎡ 이상 ~ 5,000㎡ 미만	아동관련시설(어린이집, 아동복지시설 등), 노인복지시설 (노인주거복지시설, 노인의료복지시설 등), 사회복지시설, 근로복지시설	※ 단독공동주택, 1종근린생활 시설 제외
	운동시설	◦ 「건축법시행령」 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3호 가,나목에 따른 운동시설로 연면적 500㎡ 이상 ~ 5,000㎡미만	체육관, 체력단련장, 에어로빅장, 볼링장 등			운동시설	◦ 「건축법시행령」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3호가,나목에 따른 운동시설로 연면적 500㎡ 이상 ~ 5,000㎡ 미만	체육관, 체력단련장, 에어로빅장, 볼링장 등	
대형건축물		◦ 11층 이상 ~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,000㎡이상 ~ 30,000㎡미만의 건축물 ※ 건축법 제2조(건축물 용도) 제2항 제21호, 제22호 제외			대형건축물		◦ 11층 이상 ~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,000㎡ 이상 ~ 30,000㎡ 미만의 건축물		※ 건축법 제2조 (건축물 용도) 제2항제21호 및 제22호 제외
대형광고물		◦ 건물옥상에 설치된 높이 4m 이상 · 폭 3m 이상 (옥상간판 등)			대형광고물		◦ 건물옥상에 설치된 높이 4m 이상 · 폭 3m 이상 (옥상간판 등)		
건 축 공사장	대형공사장	◦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10,000㎡ 이상 공사장		※ 착공계 접수시 즉시 지정	건 축 공사장	대형공사장	◦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10,000㎡ 이상 공사장		※ 착공계 접수 즉시 지정
	중단된 공사장					중단된 공사장			

현 행				개 정					
구 분		대 상 범 위	종 류	비 고	구 분		대 상 범 위	종 류	비 고
위험물 시 설	가 스 취급시설	◦충전소, 판매소, 제조소, 지역정압기		주거·상업·준 공업 지역 내 시설	위험물 시 설	가 스 취급시설	◦충전소, 판매소, 제조소, 지역정압기 <삭 제>		주거·상업·준 공업 지역 내 시설
	유 독 물 취급시설	◦유독물 보관·저장소				유 독 물 취급시설	◦유독물 보관·저장소 <삭 제>		
	화 학 물 질 취급시설	◦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공장				화 학 물 질 취급시설	◦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공장 <삭 제>		
공 단	일반공단	◦전수관리			공 단	일반공단	◦전수관리 <삭 제>		
	농공단지	◦전수관리				농공단지	◦전수관리 <삭 제>		
신업 중종	번지점프장	◦전수관리			신업 중종	번지점프장	◦전수관리 <삭 제, 기타로 분류 변경>		
기 타		◦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및 지역			기 타		◦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및 지역		번지점프장, 쥘와이어 등 고위험이 유발되는 고정식 레포츠시설, 단독주택, 소규모 공동주택 등

<p>※ 다중이용시설의 연면적은 허가·신고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,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 동별로 계산한다. 다만,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.</p> <p>※ 다중이용시설 중 대형건축물(11층이상~16층미만, 연면적 5천㎡~3만㎡)에 입주되어 운영되는 시설은 제외한다.</p>	<p>※ 공공업무시설, 공동주택, 중소형건축물, 대형건축물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.</p> <p>※ 연면적은 허가·신고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,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 동별로 계산한다. 다만,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.</p> <p>※ 중소형건축물로 분류된 시설 중 대형건축물(11층 이상 ~ 16층 미만, 연면적 5,000㎡ ~ 30,000㎡)에 입주되어 운영되는 시설은 제외한다.</p> <p>※ 건축물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.</p>
--	--